

서진시스템 ESG 정책

협력회사 행동규범

Supplier Code of Conduct

Innovating Sustainably, Manufacturing Responsibly

지속가능한 혁신, 책임감 있는 제조

SEOJIN SYSTEM

협력회사 행동규범

Supplier Code of Conduct

협력회사 행동규범

Supplier Code of Conduct

서 문

서진시스템 협력회사 행동규범(이하 “규범”)은 서진시스템 제품 생산과 관련된 서진시스템 및 협력회사의 모든 국내외 사업장(이하 “사업장”)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정규직, 임시직, 파견직 근로자(이하 “근로자”)가 존중받으며, 환경 친화적이고 윤리적인 기업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사업장’이란 서진시스템을 포함하여, 서진시스템에 원자재, 포장재, 인력, 물류 등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을 의미합니다. 본 규범은 서진시스템 및 협력회사뿐만 아니라, 협력회사에 원·부자재 및 포장재 등을 공급하는 모든 협력회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서진시스템(및/또는 외부 심사기관)은 본 규범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평가하고, 필요 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규범은 다음 다섯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근로자의 인권 존중 (Labor)
2. 안전한 작업환경 (Health & Safety)
3. 환경친화적 사업장 관리 (Environment)
4. 기업 윤리 준수 (Ethics)
5. 경영시스템 (Management system)

각 사업장은 규범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그 이행 여부는 기록 및 문서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자 및 근로자는 해당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서진시스템의 협력회사 관리 정책 및 기준이 변경될 경우 본 규범도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내용은 서진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seojinsystem.net>)를 통해 협력사에게 공지됩니다.

규범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 기준은 『서진시스템 협력회사 행동규범 가이드라인』에 따릅니다.

본 규범과 해당 지역의 법규가 상충할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협력회사 행동규범

Supplier Code of Conduct

1 근로자의 인권 존중 (Labor)

1.1 자발적 근로 (강제노동 금지)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비자발적 죄수 노동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채용 시 근로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체결 후 1부를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여권, 근로 허가증 등 정부가 발행한 공식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해야 하며 법적으로 고용주가 보관하도록 요구되는 경우라도 근로자 본인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고, 근로자는 희망 시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한다. 채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1.2 아동 고용 금지 및 유소년 근로자 관리

협력회사는 근로자 채용 시 근로자의 연령을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갖추고 만 15세 미만 또는 현지법규에서 정하는 고용 가능한 최저연령 미만인 자(이하 “아동”이라 함)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 만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상 위험한 공정 또는 연장/야간근로에 투입하면 안 된다. 실습생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지원 및 관리하고,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3 과도한 연장 근로 금지

주당 총 근로시간은 현지 법 기준 또는 6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매 7일마다 최소한 1일의 휴무를 허용해야 한다. 모든 연장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이는 사업장 내에서 근무 중인 모든 사내협력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준수를 요청해야 한다.

1.4 임금과 복리후생

임금은 일한 시간만큼 법정 최저임금기준 이상으로 급여와 공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되어야 하고, 연장/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현지 법규에 따라 가산수당을 각 지급해야 한다. 징계 조치로 임금에 대한 삭감은 허용하지 않는다(단, 지각 등으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공제는 인정한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1.5 인도적 대우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Gender Based Violence),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차별, 정신적/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수치심, 폭언,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회사는 합리적인 징계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규정과 절차를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협력회사 행동규범

Supplier Code of Conduct

1.6 차별 / 괴롭힘 금지

협력회사는 채용, 급여, 인센티브 지급 및 승진, 연수 등 교육훈련 기회 제공을 포함한 고용 관행에 있어서 성별, 인종, 피부색, 나이, 출신 민족·국가, 장애여부, 임신여부, 결혼여부, 정치 성향, 노조 활동 또는 사회적 신분, 은퇴 군인, 기밀 유전정보, 질병 등에 근거한 차별이 없어야 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의 근거로사용될 수 있는 항목(임신 여부 등)의 의로검진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필요한 경우, 종교적 관습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7 결사의 자유 보장

협력회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러한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보장해야한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차별, 보복, 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경영진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2 안전한 작업환경 (Health & Safety)

2.1 산업 안전 보건

협력회사는 산업안전보건 위험요인(화학물질, 전기 및 다른 에너지원, 화재, 차량 및 추락위험 등)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프로세스 또는 유해 물질(material) 대체, 안전한 공정설계, 기술적/행정적 통제, 예방 정비와 안전작업절차(잠금/차단장치)를 통해 잠재된 위험요인을 파악, 평가, 완화하고, 지속적인 산업보건 및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위험요소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대상 근로자가 반드시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근로자는 위험성이 높은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고, 직무 관련 산업안전보건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저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협력회사는 수유 중인 근로자에게 수유 시간 및 장소 제공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2 비상사태 대비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 근로자 공지 및 대피 절차 등을 마련하고, 비상사태 예방을 위한 근로자 대상 비상 대피 훈련, 쉽게 찾을 수 있고 방해물 없이 탈출이 가능한 출구 시설, 화재 감지 및 소화 장비 확보, 복구 계획을 포함한 비상사태 계획과 대응 절차를 수립, 이행함으로써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협력회사 행동규범

Supplier Code of Conduct

1.6 차별 / 괴롭힘 금지

협력회사는 채용, 급여, 인센티브 지급 및 승진, 연수 등 교육훈련 기회 제공을 포함한 고용 관행에 있어서 성별, 인종, 피부색, 나이, 출신 민족·국가, 장애여부, 임신여부, 결혼여부, 정치 성향, 노조 활동 또는 사회적 신분, 은퇴 군인, 기밀 유전정보, 질병 등에 근거한 차별이 없어야 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의 근거로사용될 수 있는 항목(임신 여부 등)의 의뢰검진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필요한 경우, 종교적 관습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7 결사의 자유 보장

협력회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러한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보장해야한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차별, 보복, 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경영진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2 안전한 작업환경 (Health & Safety)

2.1 산업 안전 보건

협력회사는 산업안전보건 위험요인(화학물질, 전기 및 다른 에너지원, 화재, 차량 및 추락위험 등)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프로세스 또는 유해 물질(material) 대체, 안전한 공정설계, 기술적/행정적 통제, 예방 정비와 안전작업절차(잠금/차단장치)를 통해 잠재된 위험요인을 파악, 평가, 완화하고, 지속적인 산업보건 및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위험요소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대상 근로자가 반드시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근로자는 위험성이 높은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고, 직무 관련 산업안전보건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저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협력회사는 수유 중인 근로자에게 수유 시간 및 장소 제공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2 비상사태 대비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 근로자 공지 및 대피 절차 등을 마련하고, 비상사태 예방을 위한 근로자 대상 비상 대피 훈련, 쉽게 찾을 수 있고 방해물 없이 탈출이 가능한 출구 시설, 화재 감지 및 소화 장비 확보, 복구 계획을 포함한 비상사태 계획과 대응 절차를 수립, 이행함으로써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협력회사 행동규범

Supplier Code of Conduct

2.3 산업 재해와 질병 예방

협력회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a) 사건/사고 보고 b) 부상과 질병사례의 유형 분류, 기록 c) 필요한 치료 제공 d) 근본원인 분석 후 시정/예방 조치 수립(근로자 교육 포함) e) 치료 후 사업장 복귀 지원

2.4 작업환경 내 유해인자 노출관리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화학적·생물학적·물리적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작업환경 측정(소음, 진동, 실내 공기질 등)을 통하여 그 영향을 파악해야 하며, 해당 위험요인들은 최대한 제거하되 불가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체 또는 적절한 관리감독 및 기술적·행정적 조치 등을 통하여 노출을 기준치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인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을 경우,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적절한 개인보호구(PPE)를 지급하고 관련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2.5 육체적 과중 업무 관리

근로자가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수작업을 해야 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서 있는 작업, 그리고 체력 소모가 많은 조립 업무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 관리해야 한다.

2.6 설비안전

협력회사는 모든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법규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물리적인 방호장치/벽과 안전장치(개방 시 설비가동 중단, 인터록)를 설치하고, 해당 장치에 대한 예방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2.7 식당과 기숙사 관리

협력회사는 직원에게 깨끗한 화장실과 먹는 물,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보관/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협력회사 또는 파견업체가 제공하는 직원 기숙사는 위생적이고 안전해야 하며, 적절한 비상구와 냉/난방, 온수, 조명 및 환기장치, 시건 가능한 개인 사물함 또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2.8 산업안전보건 교육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거나,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비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작업 시작 전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상의 문제를 자유롭게 제기/공유할 수 있도록 신고 및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협력회사 행동규범

Supplier Code of Conduct

3 환경친화적 사업장 관리 (Environment)

3.1 환경 법규 준수 (인허가와 신고의 의무)

협력회사는 법정 필수 환경 인허가를(예: 배출/방지시설 설치/운영/변경 신고) 취득, 유지,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최신 법규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준수해야 한다.

3.2 오염 예방과 자원 사용 절감

협력회사는 공정개선, 원료 대체, 예방보전, 자원보존, 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자원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로화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3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협력회사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세워야 한다. 에너지 소비량과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을 파악하여 기록하고 목표 대비 달성 수준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3.4 화학물질 관리

협력회사는 유출 시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지정 폐기물 포함)을 파악하여 기록하고, 해당 물질을 안전하게 저장, 운반, 사용, 재활용/재사용, 폐기해야 한다. 취급 간 누출 시 토양, 우수 오염이 가능한 지역을 파악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며 연 1회 이상 누출대응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3.5 폐기물 관리

협력회사는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특성, 발생량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하고,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업체(운반업체 포함)는 법적으로 적합하게 운반/처리, 폐기가 가능한지 평가(현장점검 포함) 후 선정한다.

3.7 대기오염 관리

협력회사는 공정상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물질, 연소부산물의 종류, 특성, 발생량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한다. 오존층 파괴 물질은 몬트리올 의정서 및 해당 규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 되어야 한다. 방지설비의 처리 효율은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3.7 물 관리

협력회사는 각각 취수, 사용, 배출 시 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모든 폐수는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하고, 상시 기준치 내로 배출하도록 처리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협력회사 행동규범

Supplier Code of Conduct

4 기업 윤리 준수 (Ethics)

4.1 윤리규범 준수와 부당이익 금지

협력회사는 서진시스템 윤리규범에 따라 선물을 포함한 뇌물수수, 횡령 등 부패행위를 무관용 정책으로 금지하고, 반부패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및 감시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

4.2 정보 공개

모든 거래는 투명해야 하고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업계 모범기준에 따라 노무/안전보건/환경 관리 실태, 경영 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를 해당 법규와 업계 관행에 따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하며, 정보 조작 및 허위진술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4.3 지적재산권 보호

협력회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노하우의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서진시스템뿐 아니라 하위 협력회사의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4.4 공정거래, 광고와 경쟁

협력회사는 공정거래(담합 금지), 광고 및 경쟁에 관한 규제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4.5 신원보호와 보복금지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협력회사는 비밀 및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 채널과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관련 절차를 공지하여,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6 개인정보 보호

협력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협력회사, 고객사, 소비자, 근로자 포함)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가공, 전송,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4.7 국제 거래 질서의 존중

협력회사는 서진시스템에 납품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모든 국제무역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특정국가, 기업, 단체 및 개인 등 국제 제재 대상과의 거래와 연관된 원자재/부품/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 금지를 의미하며, 국제제재대상과의 거래를 사후에 인지할 경우 즉시 서진시스템에 통보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을 말한다. 서진시스템은 필요 시 공급망 내 제재대상과의 거래 포함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협력회사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협력회사 행동규범

Supplier Code of Conduct

5 경영시스템 (Management system)

5.1 경영진의 준수의지 선언과 책임

본 행동규범의 준수 책임자로서 협력회사 경영진은 준수의지를 문서로 표현하고, 이를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경영진은 준수 현황을 연 1회 이상 검토해야 한다.

5.2 외부 요구사항 대응

협력회사는 본 규범을 포함한 최신 법규와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정기적 준수평가(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심사결과 부적합은 근본원인 분석 후 시정/예방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5.3 리스크 평가와 관리

협력회사는 노무, 윤리, 환경, 안전보건 측면의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고, 발생가능성이 크고 영향이 큰 리스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이행현황을 경영진에 보고해야 한다.

5.4 목표 수립과 관리

협력회사는 노무, 윤리, 환경, 안전보건 측면의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달성 현황을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5.5 교육훈련과 의사소통

협력회사는 본 규범과 법규 준수를 위해 관리자/근로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력회사의 정책, 목표, 성과에 대하여 명확한 정보를 근로자, 하위 협력회사, 서진시스템과 공유해야 한다.

5.6 근로자의 의견수렴과 개선, 고충처리

협력회사는 본 규범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 수준을 평가하고, 의견 및 위반사항을 취합하여 실질적 이행을 위해 고충처리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근로자들은 보복의 두려움 없이 고충과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

5.7 문서와 기록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와 사내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문서와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5.8 협력회사의 책임

협력회사는 하위 협력회사에도 본 규범을 전달하고 준수를 요구하며, 준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협력회사 행동규범

Supplier Code of Conduct

참조 자료

-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본 규범을 작성하였고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RBA 행동규범 <http://www.responsiblebusiness.org/standards/code-of-conduct/>
- 도드 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http://www.sec.gov/about/laws/wallstreetreform-cpa.pdf>
- 환경 관리 및 감사 시스템 http://ec.europa.eu/environment/emas/index_en.htm
- 윤리적 상거래 이니셔티브 www.ethicaltrade.org/
- ILO 안전보건 실행규범 <https://www.ilo.org/ilo-helpdesk-business-international-labour-standards/ilo-codes-practice-and-guidance-documents>
- ILO 국제노동기준 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norm/whatare/fundam/index.htm
- ISO 14001 www.iso.org
- 미국 화재예방협회 www.nfpa.org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http://www.oecd.org/investment/mne/1903291.pdf>
- 세계인권선언 <https://www.un.org/en/universal-declaration-human-rights/>
- UN 부패방지협약 <https://www.unodc.org/unodc/en/treaties/CAC/>
- 유엔아동권리협약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rc.aspx>
-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EDAW.aspx>
- 유엔글로벌콤팩트 www.unglobalcompact.org
- 미국 연방조달규정 www.acquisition.gov/far/
- SA 8000 <https://sa-intl.org/programs/sa8000/>
- 국제사회책임기구(SAI) www.sa-intl.org

문서이력

Version 1.0 – 2019년 6월 제정

Version 2.0 – 2025년 6월 제정

SEOJIN SYSTEM